

中國 對外貿易法の 改定에 관한 小考

趙宗柱*

-
- I. 머리말
 - II. 중국 대외무역법의 목적과 특징
 - 1. 중국대외무역법의 목적
 - 2. 중국 대외무역법의 특징
 - III. 중국 대외무역법의 개정내용
 - 1. 중국 대외무역법의 개정배경
 - 2. 중국 대외무역법의 주요개정내용
 - IV. 맺는말 - 주의사항
-

I. 머리말

중국은 2001년 12월에 WTO에 정식으로 가입함으로써 경제의 대외개방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의 교역상대국에 대한 대외개방의 획기적인 전진인 동시에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의 원칙 등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다자간 무역 자유화를 진전시켰으며, 이를 통해 세계는 공동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은 대외개방을 바탕으로 직접투자의 유입증가 및 기술의 확산이 가속화됨에 따라 대외교역은 그 규모면에서 빠르게 증가되고 있다. 2003년에는 무역

* 昌原大學校 經商大學 貿易學科 助敎授

총액 8,512억 달러로 세계 제4위로 뛰어 올랐으며, 2004년에는 수출과 수입이 각각 5,934억 달러, 5,614억 달러로 무역총액이 1조

1천억 달러를 상회하여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3위 무역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무역증가에 따라 중국은 대외무역법에 무역구제조치를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대외무역법을 통상법으로 격상시킴과 아울러 외국의 대응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한편으로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위하여 제출한 이행계획에 따라 1994년 대외무역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관련 각종 제한 및 규제를 완화하거나 삭제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1994년의 대외무역법의 일부 규정이 급변하는 교역환경과 부합하지 않았고, 또한 WTO 규정과 조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개정을 준비하여 왔다. 이번 2004년 대외무역법¹⁾은 기존의 대외무역법을 대폭 수정해 화물 수출입과 기술수출입, 대외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대외무역조사, 대외무역구제 등의 조항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개인의 무역업 허용으로 대외무역관련 부서에 자격등록을 신청한 개인도 무역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대외교역에 있어 독점행위와 부당경쟁행위에 대한 조사권한과 금지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정부차원의 구제조치와 협상을 실시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외국제품의 반덤핑과 보조금에 따른 자국산업 피해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외국정부와 대외무역관련 협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 과거의 대외무역법 보다 강화된 새로운 안전보장 조치를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 대외무역법의 목적과 특징을 기술하고, 중국 대외무역법의 개정배경과 주요 개정내용을 분석·요약하여 중국과의 교역시 주의하여 할 몇 가지의 사항을 제시하고, 한편으로는 중국 대외무역법의 이해를 확산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중국 대외무역법은 2003년 12월에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개정초안이 통과하고, 전국인민대회에 이 개정안의 심의를 요청한 후 2004년 4월 6일에 전국인민대회 위원회의에서 개정초안이 최종 통과되었으며,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II. 중국 대외무역법의 목적과 특징

1. 중국 대외무역법의 목적

중국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법이다. 중국대외무역법의 의의는 다음의 세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중국은 일관되게 직접적인 행정수단을 이용해서 대외무역관리를 해 왔지만, 본 법의 성립으로 해외무역을 법에 의하여 관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중국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관계를 규제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국가의 법률이다.

둘째, 중국 대외무역법 제4조에 “국가는 통일적 대외무역체도를 실행하고, 법에 의하여 공평하고 자유로운 무역질서를 유지·보호한다”(1994년)라고 하고 있다. 개정된 대외무역법에서도 “국가는 통일적인 대외무역체도를 실행하고 대외무역의 발전을 권장하며 자유로운 무역질서를 수호한다(2004년)”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에서는 ‘국가는 물품과 기술의 자유로운 수출입을 허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중국의 대외무역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통일적 대외무역제도 실행, 자유로운 무역질서 유지·보호를 확립했다는 것이다.

셋째, 중국 대외무역법은 전반적으로 중국의 국내사정을 감안하면서도 GATT나 WTO 등 국제적 통상규칙, 특히 중국이 이미 체결, 참가한 또는 체결한, 참가하려고 하는 국제협약, 협정 등에 합치하거나 또는 접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1994년과 2004년의 제6조). 따라서 중국은 국제통상규칙인 WTO 규범에서 인정하는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를 상대국에게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의를 가지고 성립된 중국 대외무역법의 법적위치를 살펴보자. 중국은 1950년 12월에 대외무역관리 잠정령이 공포되었고, 대외무역에 관련된 법률과 행정법규, 즉 수출입관세령, 화물수입허가제도 잠정령, 수출입상품검사법, 세관법, 섬외경제계약법, 중외합병기업법, 국제적 기술도입 관리령 등이 다양하게 존재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대외무역에 공통되는 제도와 기본정책 등에 관해 포괄적으로 정해놓은 법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법은 국가가 대외무역을 관리하는 기본방침과 기본정책 및 대외무역관계를 조정하는 기본원칙을 명확히 선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외무역분야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중국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²⁾

이러한 법적위치로 말미암아 동법 각조(제9조, 15조, 20조, 29조 그리고 제31조)에서는 기본원칙을 확립한 후에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르든지 또는 국무원 또는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시행세칙과 관련규정을 제정하기로 되어 있다.

한편 중국대외무역법 1994년 제1조에는 “중국 대외무역의 발전과 대외무역질서의 유지보호 그리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4년 제1조에는 여기에다 “대외개방의 확대와 무역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보호를 위한다”란 규정을 추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대외무역의 목적은 첫째, WTO 가입에 따라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수출입무역을 진흥시키되 대외무역질서를 유지하고 보호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대외무역경영자의 자주 경영권을 보장한다.

셋째, 위의 목적을 유지 발전시켜 결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는 무역관리를 의미하고, 무역관리는 무역장애이므로 국민경제발전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무역관리는 국가의 경제정책적 차원에서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정채산업을 육성하며 성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어 충분한 정당성을 갖는다.

2. 중국 대외무역법의 특징

1) 대외무역에 관한 기본원칙의 법적 확립

중국은 대외무역법에서 네 가지의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였다. 첫째, 공평한 경쟁을 보호한다는 원칙이다. 1992년 중국은 헌법 제15조에 “국가는 계획경제를 실행한다”란 규정을 “국가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실행하고, 경제입법을 강화한다”라고 개정하고 시장기구의 확립을 위해 ‘반 부정당경쟁법’을 대표로

2) 문준조, WTO 가입과 중국의 외국인 투자법제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2. 12, p. 67.

경쟁법제를 정비하여 “공평한 경쟁을 보호한다”(제4조)는 원칙을 확립했다.

한편 중국의 대외무역체제는 1979년까지 대외무역총공사에 의한 독점적인 ‘국가무역’이었으나, 현재는 대외무역사업자가 1만개 이상으로 확대되어 격렬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공평한 경쟁을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중국 대외무역법에서는 ‘법에 의한 공평하고 자유로운 무역질서를 유지 보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국가는 화물과 기술의 자유로운 수출입을 허락하는 원칙을 확립한 것이다. 중국의 대외무역은 일관되게 국가의 통일적 계획과 정책에 의해 관리되었으나 1978년 중국 공산당 전체회의에서 ‘경제의 국제화 흐름에 대응하여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대외무역을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국가무역의 통제적 성격을 제거해서 대외무역업자들이 자유롭게 대외무역을 할 수 있도록 경영범위를 확대하여 왔다. 즉, 대외무역총공사가 독점적으로 취급해온 품목을 삭감하고, 각 지방의 대외무역사업자의 취급품목이 확대되었다. 이것은 중국경제가 국제화의 물결에 따라 국제적인 규율에 접근하고, WTO 규범에 맞추기 위해 “본 법에 화물과 기술의 자유로운 수출입을 허락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셋째, 중국 대외무역법에는 “국가는 통일적인 대외무역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내의 지방에 따라 상이한 대외무역에 관한 법규가 적용됨으로써 세계, 무역제도, 관세감면 그리고 수입품의 대우가 달리 규율되기 때문에 국가의 이익을 손상시킨다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 그래서 중국의 전지역에 걸쳐 통일적인 대외무역제도를 법에 의하여 확립하여 지역에 관계없이 공평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넷째, 평등호혜의 원칙을 확립한 것이다. 대외무역법(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는 “중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대외무역관련 국제조약, 협정의 체결국이나 참가국에게 호혜, 평등의 원칙에 따라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고, 어떠한 국가가 중국에 대하여 차별적인 금지, 제한 및 유사조치를 취하는 경우 중국은 해당 국가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현 상황에 맞는 대외무역정책의 명확화

중국 대외무역법은 현단계에서 중국의 경제실정에 적합한 대외무역의 기본

원칙을 두가지로 나타내고 있다.

첫째, 대외무역기업의 관리를 계속 하겠다는 것이다. 즉, 대외무역기업이 화물과 기술의 수출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다섯 가지 요건³⁾을 갖추고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의 허가를 획득하도록 하였다(중국 대외무역법(1994) 제9조). 즉, 중국이 현단계에서 대외무역경영권의 허가제를 계속 유지한다는 의사 표시였었다. 이는 개발도상국인 중국이 현재 시장경제체제로 대외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정책을 채택한다면 부정확한 수출입경쟁과 반덤핑행위로 국가이익의 손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조치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2004 대외무역법에서는 화물수출입 또는 기술수출입에 종사하는 대외무역경영자가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 또는 위탁기구를 통하여 등록하도록 하여 무역업을 관리하고 있다.

둘째, 국제 서비스무역을 점차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중국 대외무역법(1994) 제2조에는 “대외무역을 물품 및 기술의 수출입과 국제서비스 무역을 가르킨다”고 규정하여 우루과이 라운드의 중요한 내용의 한가지인 서비스 무역에 관련된 취지를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10조에서는 국제서비스 무역기업의 조직의 설립 및 그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유관법률이나 행정법규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또한 제15조에서는 화물수출입과 기술수출입부분에서 국제서비스무역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률, 행정법규의 별도규정에 따라 무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개정된 대외무역법에서도 국제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상대국에게 시장진입을 허락하거나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고 있지만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처와 국무원관련부처는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국제서비스 무역을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현단계에서 화물과 기술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의 원칙을 국제거래에 적용하고, 국제 서비스무역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서비스무역이 물품이나 기술의 수출입과 거래의 형태가 다르고,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없는 미발전산업으로 보고 미성숙산업의 보호, 동업종간의 경쟁 등에 대응하여 계획적, 단계적, 선택적인 국외의 서비스업을 중국에 진출시켜 국내의 동업종을 급속한 발전을 촉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3) 허가요건은 명칭 및 조직기구, 명확한 대외무역경영범위, 업무장소·자금·전문인력, 수출능력 등이다.

Ⅲ. 중국 대외무역법의 주요개정내용

1. 중국 대외무역법의 개정배경

1) WTO 가입에 따른 국제규범의 준수 및 국제무역규칙의 개방화

중국은 국제정치·경제적 위상제고와 WTO 가입에 따른 최혜국대우의 획득을 위해 WTO 가입을 추진하였다. 15년이라는 협상 끝에 2001년 11월 자카르타 도하에서 개최된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WTO 가입이 승인되었다. WTO 가입은 국제무역과 관련된 모든 법률과 규정에 의하여 대외무역이 수행됨으로써 중국 정부에게 각종 무역장벽이나 제도적인 문제점을 국제규범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과제도 동시에 부여되었다.⁴⁾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무역제도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기 위하여 대외무역법의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⁵⁾

2) 국제무역의 확대에 따른 분쟁감소

중국은 1994년에 대외무역법을 제정하였다. 그후 중국의 무역규모는 1998년에 3100억 달러에 2003년 8,500억 달러, 2004년 1조1천억 달러를 돌파하여 세계순위가 11위에서 4위, 3위로 오르는 등 국제무역에서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를 감안할 때 기존의 대외무역법으로서는 변화하는 무역환

-
- 4) 1994년 대외무역법 규정중에서 WTO 규정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대외무역경영권은 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경영권이 없는 조직이나 개인은 무역업무를 대외무역대리기업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상품과 기술의 수출입에 관해서도 국가가 그러한 수출입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 다른 조항에도 WTO 규정에 위반되는 규정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李筍, “我國 對外貿易法與WTO規則”, 法學雜誌, 2000 6期(總 第123期), p.33 이하 문준조, 전게서, p.61에서 재인용).
- 5)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제2조에 중국이 WTO 협정에 속하거나 WTO 협정에 영향을 주는 법률, 법규 및 기타조치에 대하여 통일적이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적용 관리하고, 또한 계획경제하에서의 내부지령 및 조치에 의하여 집행하지 말고 법률, 법규 및 기타 조치를 통하여 시행하는 투명성을 보여주어야 하며, 한편으로 모든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민법원의 사법심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비로소 중국의 법제는 WTO 규칙에 조화될 수 있다(조유전, “중국의 WTO가입과 중국 대외무역법”, 제1회 중국법제포럼 발표논문, 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 2002. 3, pp.2~3).

경에 적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미국, 일본 등의 입법사례를 참고하여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였다.⁶⁾ 중국은 대외무역법의 개정을 통해 중국이 자유무역, 공정무역을 표방하는 국가이며, WTO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의사를 표방함으로써 미국, 일본, EU 등의 이해를 구하면서 계속되는 무역장벽에 대한 분쟁을 줄이기를 고대하고 있다.

3) WTO 가입 이행계획의무의 이행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위하여 제출한 이행계획서에는 무역장벽의 제거 및 완화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 규정중에 대외무역법과 관련해서는 대외무역을 할 수 있는 무역권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하게 하는 것이 이행계획상의 의무였다. 즉, 대외무역권을 개인에게까지 확대하고, 허가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등기·등록을 하도록 절차를 간소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내에서도 대외무역권을 가진 기업과 그렇지 않는 기업간에 차별성을 야기시켜 공정경쟁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복잡한 절차로 인해 행정기능을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대외무역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⁷⁾

2. 주요개정내용

개정된 중국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보호, 대외무역관련 조사기능·방법,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외무역구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총칙에 지역협력의 강화내용을 추가하였다. 또한 대외무역업자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였으며, 구 대외무역법에서는 법률규정에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지 않았으나 개정된 대외무역법에서는 법령위반행위별로 처벌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이들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탁세령, “중국의 무역정책과 우리의 대응방안”, 수은해외경제, 한국수출입은행, 2004. 7, p.11.

7) 이정표·손성문, “중국 대외무역법 개정내용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0권 제1호, 2005. 3, p.21.

1) 무역업의 관리완화

중국의 대외무역법(1994)에서는 대외무역의 신청자격을 중국의 법인과 기타 조직으로서 자연인이나 외국법인에게 부여하지 않았다(제8조). 다만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규에 의거하여 기업자체 사용물품의 수입 및 기업생산에 필요한 각종 설비, 원료, 기타 물자의 수입, 그 생산품의 수출을 가능하게 하였다(제9조).⁸⁾ 따라서 정부산하의 국유기업을 위주로 일부 기업(35,000개사)에만 무역업을 허가하여 주었으며, 무역업의 허가가 없는 기업은 수출입을 할 수 있는 대외무역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외무역공사가 수출입을 하였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기업생산에 필요한 설비, 원자재를 수입할 수 있고 자가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범위내로 무역권을 제한하였다.⁹⁾ 그러나 개정된 대외무역법에서는 대외무역사업자를 공상등록 또는 기타 영업수속을 하고 제 규정에 따라 대외무역사업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을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도 무역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제8조).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인도 개인으로서 수출입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구 대외무역법에서는 물품 및 기술수출입의 대외무역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조건을 갖추고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무역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당시 중국이 계획경제하에서 정부의 필요한 물자를 수출입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소수의 수출입기업으로도 중국의 대외무역량을 담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4년도를 지나 10년이 경과되면서 중국의 대외무역규모는 대폭 증가하였고, 대외무역권에 대하여 허가제를 시행함으로써 중국기업들간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성이 높아졌다. 또한 WTO의 가입을 위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허가제를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¹⁰⁾ 이에 따라 개정 대외무역법에서는 화물수출입 또는 기술수출입에 종사하는 대외무역경영자가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문 또는 위탁

8) 탁세령, 전개논문, p.7.

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중국경제년보- 개혁·개방의 현단계, 2003. 4. 20, p.202.

10) 이정표·손성문, 전개논문, p.26; 深四宝, “對外貿易法律若干問題”, 中國貿易論壇, 中國國際貿易學會回刊, 2004. 2, p. 25.

기구를 통하여 무역업을 위하여 등기¹¹⁾하여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대외무역경영자는 대외무역 주관부문의 허가를 얻어야 하였으나 개정된 대외무역법에서는 등록을 하도록 하여 그 요건을 완화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지난 7월 1일 개정된 대외무역법 시행 이후 중국 기업 5813개, 외자기업 150개, 대만·홍콩 기업 21개 등 6,036개 기업이 대외무역경영권을 받았다.¹²⁾

2) 수출입물품의 관리축소

전략비축물자의 교역을 부분적으로 일반 무역업자에게도 허용하였다. 그동안 석유, 곡물, 비료, 면화, 설탕 등과 같은 전략비축물자의 수입은 국유기업에 제한되었으나 이제는 일반 기업도 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전략비축물자의 일정비율에 대하여는 비허가업체도 무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중국은 WTO 가입시 약속했던 수출입대상품목의 전면적 개방을 이행하게 되어 상가 품목의 교역증대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¹³⁾

3) 무역구제조치 도입

중국은 평균수입관세율을 2000년 16.4%, 2001년 15%, 2002년 12%로 인하하였으며, 향후 3년에 걸쳐 2005년까지 관세를 계속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렇게 관세가 인하됨으로써 중국은 대외무역구제조치를 통하여 대외무역을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신 대외무역법에서는 국가는 대외무역조사의 결과에 근거하여 대외무역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40조)고 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중국의 대외무역구제조치에 관한 법체제는 1994년에 대외무역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되었으나 구제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된 대외무역법의 구제조치는 상품의 덤핑수출, 수출품의 보조금지급, 상품과 서비스의 중국내 대폭적인 수입으로 인하여 중국에 이미 육성된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나 손

11) 등기는 무역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등기관련기관에 신청서류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등기부에 등록한 후 대외무역권을 갖는 것이다. 대외무역권 획득절차: 각 지방 대외무역주관부문에 등록신청 → 해당기관은 5일 이내에 등록수속 종료 → 30일내 등록표를 휴대하여 해관, 세무, 외환 등 기관에 수속신청. 준비서류: 등록표, 사업자등록증(시 공상국) 사본, 법인코드증 사본(시 품질기술관리국),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재산공증증명(개체공상기업).

12) 헤럴드경제, 한희라 기자(hanira@heraldm.com), 2004-08-03.

13) 이춘삼, 중국통상법, 문양사, 2004, p.251.

해의 위협을 초래하거나 중국 국내산업육성에 실질적인 장애를 야기한 경우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하여 이런 손해, 손해위험, 장애를 제거하나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외무역법에서는 구제조치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구제조치는 반덤핑조례, 세이프가드조례, 반보조금조례를 통하여 시행된다.

① 반덤핑 조례

대외무역법(1994)에서는 제30조에 반덤핑관련조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후 중국은 1997년에 반덤핑조례를 제정하면서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반덤핑조례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반덤핑운용 절차를 당국의 내부규정에 맡겨두고 있어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 둘째, 사법심사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즉 최종판정 이후의 결과에 불복하면 어떠한 절차로 행정조치가 되는지 명백하지 않다. 셋째, 동종 상품의 정의와 정상가격의 산정의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 또 하나는 반덤핑조례는 일방적 보복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즉 반덤핑조례 제40조에 어떤 국가나 지역이 중국 상품에 대하여 차별적인 반덤핑조치를 취하면 중국 역시 이러한 상황에 근거하여 그 국가나 지역에 대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¹⁴⁾

이러한 중국의 대외무역조치들은 WTO의 다자간 규칙의 위반이며, 외국기업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대우를 보장할 규정들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04년 개정된 대외무역법은 대외개방의 확대와 정책의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무역구제조치로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며(제41조 -제42조), 이 규정에 따라 반덤핑 조례를 개정하였다..

개정된 반덤핑조례¹⁵⁾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반덤핑조사기관의 통일이 다. 이전의 조례에서는 반덤핑조사를 경제무역위원회와 대외경제무역협작부간 것을 상무부가 모두 관할하는 것으로 하였다. 둘째, 개정된 반덤핑조례에서는 “반덤핑관세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이는

14) 탁세령, “개정대외무역법의 주요내용과 전망”, 수은해외경제, 한국수출입은행, 2004. 7, p.11.

15) 중국 반덤핑조례(中華人民共和國反傾銷條例)는 2001년 11월에 개정되어 총6장 제5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2. 1. 1일에 시행하였다가 개정된 대외무역법에 맞추어 일부 개정되어 2004년 6월 1일에 시행되었다.

반덤핑관세가 특정산업의 요구에 따른 수입제한 기능을 주로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공공이익이라는 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즉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경우 반덤핑조사를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셋째, 반덤핑관세의 소급적용을 연장·강화하였다. 종전에는 수입상품이 국내산업에 손해를 입힌 사례가 있거나 단기에 대량으로 수입된 경우에 한해서 반덤핑관세부과 결정일로부터 90일 전까지 소급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개정 조례에서는 상무부의 조사결과 위의 사실이 모두 해당될 경우에 반덤핑관세를 소급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소급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소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한 위에 해당하는 상품은 수입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입상품에 대한 수입등기를 하게 하여 수입절차를 까다롭게 하였다.¹⁶⁾

② 세이프가드 조례¹⁷⁾

중국 대외무역법(1994)에서는 제29조에 상품의 대폭적인 수량증가의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된 중국 대외무역법(2004)에서는 상품과 서비스의 대폭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제3국의 수입규제로 인하여 중국으로 상품의 대폭적인 증가가 있을 때에도 필요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제44조-제46조).

세이프가드 조례(中華人民共和國 保障措置條例)¹⁸⁾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에는 예비판정 후에 최종결정을 내려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였으나 개정후에는 예비판정을 생략하고 바로 최종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과거에는 수입제품의 증가로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예비판정을 내리고 다시 일정기간의 추가조사를 거쳐 최종결정을 내렸다. 예비판정에서 세이프가드 조치가 취해질 것을 판정이 난 경우 최종 결정시까지 대상국에게는 그 결과에 대하여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주어졌던 것이다.

둘째, 세이프가드의 실시기한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였다. 과거의 세이프가

16) 탁세령, 전개논문, p.12~13.

17) 탁세령, “반덤핑 조례 등의 주요개정내용과 전망”, 수은해외경제, 한국수출입은행, 2004. 6, p.61.

18) 이 조례는 2001. 11. 26일에 공포되어 2004. 6. 1일에 시행되었다

드의 실시기간은 4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피해정도가 심각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기간을 4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개정에서는 실시기간을 종전과 같이 4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했으나 연장기간을 6년으로 하여 최장 10년까지 연장되었다. 이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명시된 총 연한 8년보다 긴 것으로 향후 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반발이 예상된다.

셋째,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칙에 임의의 국가가 중국의 수출제품에 대해 일시적인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은 실제상황에 따라 동지역 또는 동국가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방적인 보복조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¹⁹⁾ 예를 들어 2000년에 발생한 한·중 마늘분쟁을 들 수 있다.²⁰⁾

③ 반보조금조례

개정된 대외무역법에서도 1994년 대외무역법과 내용은 같으나 이전에는 대외무역질서의 장에 규정한 반면, 개정법에서는 대외무역구제의 장에 기술하였다. 이에 따라 반보조금 조례도 개정법에 따라 2004년 3월에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개정되었다.

반보조금조례(中華人民共和國反補貼條例)²¹⁾는 별다른 개정사항이 없이 관련 정부기관의 명칭이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상무부로 개정되었다. 중국은 현재까지 교역상대국에 대해 보조금 관련 조사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보조금과 관련하여 거래상대국과 분쟁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 지적재산권 관련규정도입

중국은 WTO 가입 노력의 일환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여러 차례 약속하였고, 또한 특허권과 상표권 보호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이를 엄격히 실행함으로써 외국의 하이테크 기업의 중국직접투자를 강화할 목적으

19) 이원근·장동식, “한·중간의 세이프가드 관련분쟁과 대응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통권 제46호, 법무부, 2002. 8, p.121.

20) 한중간 마늘분쟁은 한국이 중국산 마늘의 수입급증으로 가격이 폭락하여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중국에 대하여 긴급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중국이 폴리에틸렌, 휴대폰 등에 대하여 잠정수입조치를 취하였다.

21) [http://cafe.naver.com/law8610.cafe\(2004.2.16\)](http://cafe.naver.com/law8610.cafe(2004.2.16)) 이 조례는 2001년 11월 26일에 공포되어 개정된 대외무역법에 따라 일부 개정이 있는 후 2004년 6월 1일에 시행되었다.

로 다른 나라들의 지적재산권과 조화를 도모하며,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외무역법을 개정할 계획이었다.²²⁾

이에 따라 중국 대외무역법에서 지적재산권보호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즉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기존 수입품도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대외무역 질서를 혼란시킨 것으로 판명될 경우 수입금지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기업과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국제조약과 협정에 따른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9조-제31조). 따라서 중국은 세계에서 복제품이 제일 많은 국가로 비난받고 있으며, 미국, 일본, EU로부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를 계속 받아 왔으나 대외무역법이 개정됨으로써 대외적인 면에서 대외개방과 평등호혜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확립하는 것이다.

5) 대외무역조사의 신설

개정 대외무역법에서는 대외무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무원의 대외무역 주관부서 및 기타 유관부서에서 일반물품 수출입, 기술 수출입, 서비스 수출입이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국가의 무역장벽 등을 법률에 의거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외무역조사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조사중에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였다(제37조-제39조).

이는 1994년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에 따라 조사하던 것을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한정하지 않고, 상계관세, 부당경쟁행위, 반독점행위, 비관세장벽에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이다.²³⁾ 대외무역조사의 세부적인 범위는 상품수출입, 기술수출입, 국제서비스무역이 국내산업 및 그 경쟁력에 대한 영향과 관련 국가 또는 지역의 무역장벽, 반덤핑, 반조조금 또는 세이프가드 등 대외무역구제조치의 실시를 확정하기 전에 조사해야 할 사항, 무역구제조치를 회피하는 행위, 대외무역중의 국가안전이익과 관련된 사항, 대외무역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사항 등이다. 이러한 대외무역조사는 주요 무역국이 자국 산업 및 시장질서 보호의 중요한 법적 수단으로

22) 문준조, 전게서, pp.77~78.

23) 이정표·손성문, 전게논문, p.28.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중국도 시장개방과 더불어 법체계내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²⁴⁾

IV. 맺는말 - 주의사항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중국 대외무역법을 통하여 무역관리를 통일성있게 시행하고, 자유무역을 지향하며, 대외적으로 호혜평등을 천명하고 상호주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수출입쿼터제 및 무역등록제의 유형단순화 내지 투명하고 공평한 정책운용이 미비하며, 서비스무역에 대한 구체적인 하위법 제정이 결여되었고, 그리고 대외무역법의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중국 정부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있다.

지적재산권문제에 있어서도 중앙정부는 WTO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천명하고 있지만, 중국의 지방정부는 상표권·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형식적인 단속과 처벌하고 있어서 투명하고 개방된 시스템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는 현재로서는 힘들어 보인다.²⁵⁾ 또한 중국은 지적재산권과 공정한 국제경쟁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하여 많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률, 행정법규, 기타 수출입 제한과 관련된 법규정들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무역업자들은 반드시 이점에 대하여 주시를 하여야 할 것이다.

무역장벽조사에 대해서도 중국은 한나라가 자국의 상품·서비스에 대하여 부정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내용에 근거하여 관련 국내법, 국제조약, 협정 등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향후 이 규정으로 중국과의 무역관계에서 불공정무역관행 등에 대한 조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4년의 대외무역법은 “생산을 위한 공장”에 대외무역권을 개방하였으나, 2004년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영업범위에 “화물 및 수출입”이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대외무역권을 등록하도록 하였다. 즉, 중국 상무부는 각 직할시, 성, 특정 국가급 개발구역 관리위원회의 외국무역관련 주관기관 등에 그 권한을 위임

24)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條約法律司, 中華人民共和國對外貿易法釋義, 中國商務出版社, 2004. 7, pp.152-165.

25) 안충영 등, 중국경제를 읽는 지혜, 비봉출판사, 2004, pp.53~54.

하였고, 그 곳에 무역권 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영업자격증에 “화물 및 기술의 수출입”이 기재되어야 하기 때문에 영업경영범위를 “화물 및 수출입”으로까지 확대한 후 무역권을 신청하여야 하는 행정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²⁶⁾ 하지만, 대외무역사업의 신청에 있어서도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거나 투자위험에 대한 우려로 신청자가 아직 많지 않은 것 같으나 앞으로 개인의 대외무역에 대한 수요는 분명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여겨진다.²⁷⁾

그리고 무역사업자도 이전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수출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외무역사업자격이 있는 자인가와 대표자의 경영범위를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WTO의 가입을 계기로 하여 많은 대외무역관련 법률, 법규 등의 재개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업자들은 중국의 대외무역관련법법규 및 통상정책 등에 관심을 갖고 주도면밀하게 통상운영의 방향을 잡아서 대중국 수출제품의 생산 및 수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제 세계무역체제는 중국의 WTO 가입, 기술발전의 기존보호체제내 수용문제,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관계조정, 기존협정 등의 이행문제 등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 또한 이러한 것과 관련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및 서비스개방분야 문제가 WTO 뉴라운드시대에서는 단지 법률적인 측면이나 경제적 효과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제통상차원에서 보호·대응해야 할 통상문제로 그 영역을 본격적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26) 2004년 7월 19일 經濟日報

27) 2004년 8월 2일 人民網-人民日報海外版

參考文獻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중국경제년보- 개혁·개방의 현단계, 2003. 4. 20.
- 문준조, WTO 가입과 중국의 외국인 투자법제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2. 12,
- 深四宝, “對外貿易法律若干問題”, 中國貿易論壇, 中國國際貿易學會回刊, 2004. 2.
- 안충영 등, 중국경제를 읽는 지혜, 비봉출판사, 2004.
- 李筍, “我國 對外貿易法與WTO規則”, 法學雜誌, 2000 6期(總 第123期).
- 이원근·장동식, “한·중간의 세이프가드 관련분쟁과 대응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통권 제46호, 법무부, 2002. 8.
- 이정표·손성문, “중국 대외무역법 개정내용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0권 제1호, 2005. 3
- 이춘삼, 중국통상법, 문왕사, 2004.
- 조유진, “중국의 WTO가입과 중국 대외무역법”, 제1회 중국법제포럼 발표논문, 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 2002. 3.
-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條約法律司, 中華人民共和國對外貿易法釋義, 中國商務出版社, 2004. 7.
- 탁세령, “개정대외무역법의 주요내용과 전망”, 수은해외경제, 한국수출입은행, 2004. 7.
- 탁세령, “반덤핑 조례 등의 주요개정내용과 전망”, 수은해외경제, 한국수출입은행, 2004. 6.
- 탁세령, “중국의 무역정책과 우리의 대응방안”, 수은해외경제, 한국수출입은행, 2004. 7.
- 헤럴드경제, 한희라 기자(hanira@heraldm.com), 2004-08-03.
- 2004년 7월 19일 經濟日報.
- 2004年 8月 2日 人民網-人民日報海外版.
-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 중국 반덤핑조례(中華人民共和國反傾銷條例)
- 세이프가드 조례(中華人民共和國 保障措置條例)
- 반보조금조례(中華人民共和國反補貼條例)

ABSTRACT

A Study on the China's revised foreign Trade Law

Jo, Jong Ju

China had revised Foreign Trade Law in order to fulfill its WTO commitments and duties, and fully exercise its rights and benefits as a WTO member.

The main contents of the revised Foreign Trade Law as followed. For the first time, individuals are allowed to conduct foreign trade. Intellectual property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foreign trade, and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a key issue. A chapter on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s one of the major additions to the Foreign Trade Law. New sections have also been added to allow and provide guidance for conducting investigations and seeking relief. Finally, the new law beefs up and clarifies enforcement procedures. It regulates the setting up of early warning and emergency systems and a foreign trade statistics system.

Key Words : China, Foreign Trade Law,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procedures.
--